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08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의 오염된 부분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로 한정한다)

별표 4의3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천연방사성핵종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해체 또는 분

리된 부분품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u>신청하여야</u> 한다. <u><신 설></u>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 ----- ----- ----- ----- ----- <u>신청해야</u>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7367